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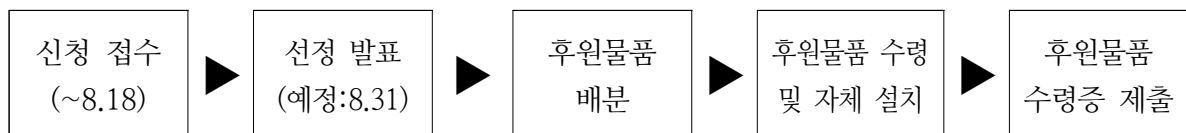
2023 서울에너지플러스 사회복지기관(시설)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플러스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('20.4.3, 시행)로 신축, 교체 등 보일러 설치 시, 환경부에서 인증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4대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친환경보일러 본체를 후원받아 서울시 사회복지기관(시설)에 지원하고자 함.
또한,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('20.8.5, 시행)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, 함께 지원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 서울에너지플러스 사회복지기관(시설)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
- 후원처 : (주)귀뚜라미, (주)경동나비엔, 린나이코리아(주), 대성썬텍에너지스(주)
- 지원대상 : '20. 4. 3. 이전 설치된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보유한 서울시 사회복지기관(시설)
- 지원물품 :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본체 120대 (일산화탄소 경보기 포함)
 -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보일러와 동일 용량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지원
 - 친환경보일러 4개 제조사 제품에서 임의 배분되므로, 보일러 제조사 선택 불가능
 -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없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능
 - 친환경보일러 본체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지원하며, 연통과 가스관, 실리콘 등의 추가 자재는 지원하지 않음
 - 설치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, 별도의 설치 서비스 및 설치비용 지원하지 않음
 -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할 경우,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

○ 사업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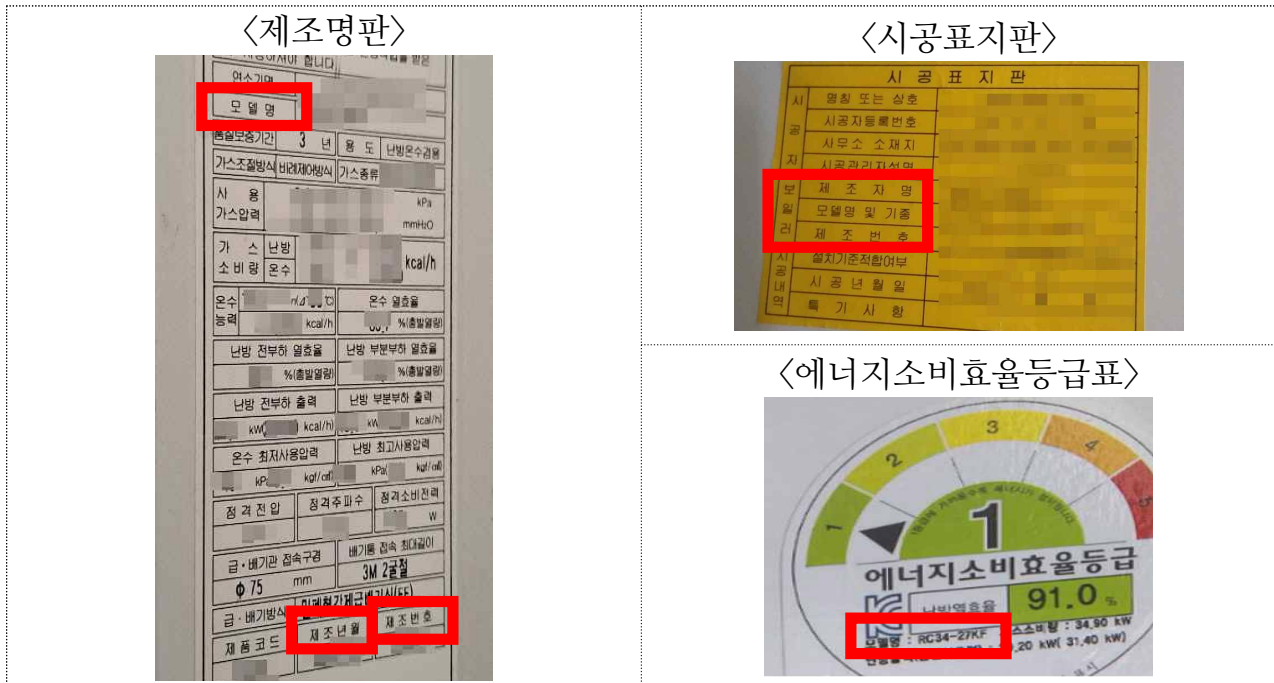


-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선정발표 :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
- 자세한 지원시기와 배분방법은 선정발표 시 별도안내

□ 신청서 작성방법

○ 기존 보일러 현황 확인 방법

- 보일러 전면의 시공표지판 확인 : 모델명,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
- 보일러 전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 확인 : 모델명 확인 가능
- 보일러 측면의 제조명판 확인 : 모델명, 제조년월,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



○ 친환경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방법

-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배수구 여부를 통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나, **보일러 시공업자를 통한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이 가장 정확 하오니,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**

<친환경보일러 설치>	<2종 일반 보일러 설치>
•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• 보일러와 배수구 사이의 직선거리가 3m 미만인 경우	•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 • 보일러와 배수구 사이의 직선거리가 3m 이상인 경우

-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가로·세로·높이가 50~100mm가량 크고,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연통이 10cm가량 길어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.
-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실내(세탁실, 보일러실, 다용도실 등)가 아닌 옥외(바깥)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겨울철 동파 발생에 대한 우려로 설치가 불가합니다.

○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?

-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할 경우,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음
- 특정가스사용시설 해당 여부는 개별 기관 및 시설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발생할 검사비용도 직접 확인해야 함.

구분	내용
특정가스 사용시설	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. - 월 사용예정량이 2천㎥(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㎥)이상인 가스사용시설 - 월 사용예정량이 2천㎥(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㎥)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• 내관이 바닥벽 등에 매립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• 시·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고시하는 가스사용시설(어린이집, 청소년수련시설, 경로당, 사회복지시설)
제1종 보호시설	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•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어린이놀이시설, 경로당, 청소년수련시설 •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• 의료기관, 도서관, 전통시장, 숙박업, 목욕탕, 영화상영관, 종교시설 -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과 창고는 제외)로서 사실상 도립 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. - 공연장·예식장·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-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-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

○ 문의 : 서울에너지플러스 추승희 주임(02-2021-1751)